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 ~ 제6조)

○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업무의 분담 및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8조)

○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및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제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 22. ~ 2015. 11. 11.)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제정 내용은
-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
- 안 제3조에서는 관리·지원계획의 구체화
-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
- 안 제5조에서는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의 의무화, 시설의 정기검사 등 안전의무 확행
-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업무의 분담 및 안전감시망 구축

○ 검토결과 상위법인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적합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에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지역의 안전한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하여 더 안전하고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

3. 주요내용

○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
○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항목 및 지원중단 사유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46,000천원 정도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2015. 11. 5. ~ 2015. 11. 25. (의견 없음)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방범 활동 및 선도활동 등 지역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성주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은
-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
-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
-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도·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○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,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, 청소년 선도,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치안수요의 일정부분을 보완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